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35

발의연월일: 2021. 2. 1.

발 의 자:박 진·강대식·강민국

강훈식 • 권명호 • 권영세

김기현 · 김예지 · 김영식

김 웅・김은혜・김주영

노웅래 • 박성중 • 박수영

배준영 • 배현진 • 변재일

성일종 · 송석준 · 신원식

양금희 · 유경준 · 이광재

이 영 · 이헌승 · 조응천

정성호 • 정유천 • 정일영

전주혜 · 조태용 · 지성호

태영호 · 황보승희 · 하영제

의원(3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려는 목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의 인구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현상으로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반려(伴侶)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공원 일대에 반려동물이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서울시의 경우 도심 내에 근린공원 규모가 작아 하천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저촉하는 행위(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해당 시설의 설치에 많은 제약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금하고 있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들이터가 설치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제3호).

법률 제 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3호 중 "행위"를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伴侶)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	4
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	
서는 아니 된다.	,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3
<u>행위</u>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1
	호의3에 따른 반려(伴侶)동물
	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
	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 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